

●산림청고시 제2023-23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(공익용→임업용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2월 28일

산림청장

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공익용산지 → 임업용산지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강원도	춘천시	내평055	NJ52-10-1-055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내평065	NJ52-10-1-065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내평081	NJ52-10-1-081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내평082	NJ52-10-1-082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내평091	NJ52-10-1-091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내평093	NJ52-10-1-093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용두005	NJ52-9-14-005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06	NJ52-9-7-006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07	NJ52-9-7-007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17	NJ52-9-7-017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75	NJ52-9-7-075	임업용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95	NJ52-9-7-095	임업용산지
경상북도	성주군	가야068	NI52-2-2-068	임업용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